유럽인권재판소

1. 명칭 : 유럽인권재판소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 설립 경위

❍ 1949. 5. 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설립

❍ 1950. 11. 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약칭 '유럽인권협약') 채택 – 1953. 9. 3. 발효

❍ 1954. 5. 18. 유럽인권위원회 출범

❍ 1959. 1. 21. 유럽인권재판소 출범(첫 재판관 선출)

❍ 1998. 11. 1. 유럽인권협약 제11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유럽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상설 유럽인권재판소로의 통합

3. 설립 목적 및 특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증진을 위해 창설된 유럽평의회가 1950년 유럽인권협약을 채택하고,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1959년 유럽인권재판소를 설립함

❍ 유럽인권협약의 절차적 감독기구는 초반에는 비사법적 기구인 유럽인권위원회와 비상설의 유럽인권재판소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였으나, 냉전 종식 후 다수의 구공산권 국가들이 가입하며 1998년 유럽인권위원회가 폐지되고 상설재판소로 재탄생한 유럽인권재판소로 일원화됨

❍ 1959년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 이후 1975년까지 16년간 선고된 판결이 20건

에 불과하였으나, 상설재판소로의 변화와 회원국의 급격한 증가로 사건이 급증하여 재판소에 접수·배당된 사건이 2000년에 처음 1만 건을 넘었고, 2010년에는 6만 건을 넘었으며, 2021년에는 44,250건이었음

- ❍ 현재 유럽인권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대한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인정되고(제11의정서), 개인의 직접 제소도 허용됨(협약 제34조)
-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함
- ❍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임

4. 유럽인권협약 체약국(47개국)

- ❍ 유럽평의회 회원국인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1]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5. 구성

- ❍ 재판소장 1인, 부소장 1~2인 포함 체약국 수와 같은 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됨(협약 제20조, 제25조 제a호)
- ❍ 재판소장 및 부소장은 전원재판부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 가능함(협약 제25조 제a호)
-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협약 제23조 제1항)
- ❍ 재판관의 자격 :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국내의 고위 법관직에 임명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능력이 인정되는 법학자(협약 제21조 제1항)

---

1) 유럽평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 3월 16일 러시아를 회원국에서 공식 제명하였으며, 2022년 9월 16일부터 러시아의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지위도 정지될 예정임

○ 재판관은 각 체약국마다 해당 체약국이 올린 3인의 후보 중에서 유럽평의회 의회(Parliamentary Assembly)가 다수결로 선출함(협약 제22조)

○ 재판관은 재판에 있어서는 개인으로서 심리하며 국가를 대표하지 않음(협약 제21조 제3항)

○ 재판관은 독립성이나 공정성, 상임직의 요구와 양립될 수 없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협약 제21조 제4항)

○ 재판관은 교체될 때까지 직을 보유하나, 이미 심리에 관여한 사건에는 계속 관여함(협약 제23조 제2항)

○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이 3분의 2 다수결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않음(협약 제23조 제3항)

○ 재판소는 단독재판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3인 위원회(committees of three judges),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Chambers), 1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대재판부(Grand Chamber)를 둠(협약 제26조 제1항)

6. 권한

○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짐(협약 제32조)

- 국가 간 사건 : 모든 체약국은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위반에 대하여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협약 제33조)
- 개별 제소 : 유럽인권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체약국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정부기구, 개인집단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협약 제34조)
- 판결의 집행 : 유럽평의회 각료회의(Committee of Ministers)는 판결 해석의 문제로 최종판결의 이행에 대한 감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당 사안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고(협약 제46조 제3항), 체약국이 최종판결의 준수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판결 준수 여부의 문제를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음(협약 제46조 제4항)

- 권고적 의견 : 재판소는 각료회의의 요청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음(협약 제47조)

7. 심리 및 결정

○ 유럽인권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함(협약 제38조)

○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그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의 사건만을 다룰 수 있음(협약 제35조 제1항)

○ 단독재판관은 심리적격(적법요건)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인 위원회나 소재판부로 회부함(협약 제27조 제1항, 제3항)

○ 3인 위원회는 심리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확립된 선례가 있는 경우 신청이 적법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을 내릴 수 있음(협약 제28조 제1항)

○ 개별 제소 사건에 대하여 단독재판관 또는 3인 위원회의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또는 국가 간 사건의 경우 소재판부가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하여 결정함(협약 제29조)

○ 대재판부는 다음의 경우 사건을 심리함(협약 제31조)

- 소재판부의 관할권 이양 : 소재판부에 계류된 사건이 유럽인권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나 소재판부에 의한 사건해결이 재판소의 선례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소재판부는 대재판부로 관할권을 이양(relinquishment)할 수 있음(협약 제30조)
- 당사자의 대재판부 회부 요청 : 예외적인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소재판부의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이 대재판부로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건이 유럽인권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중대한 쟁점을 제기하는 경우 회부 요청을 받아들여야 함(협약 제43조)

- 사건 당사국의 최종판결 준수 여부 결정을 위하여 각료회의가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협약 제46조 제4항)
- 각료회의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경우(협약 제47조)

○ 예외적인 경우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심리는 공개됨(협약 제40조 제1항)

○ 심리적격에 대한 결정 및 본안 판결에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협약 제45조 제1항)

○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밝힐 수 있음(협약 제45조 제2항)

○ 체약국은 자신이 당사국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을 따를 것을 약속함(협약 제46조 제1항)

○ 재판소의 최종판결은 각료회의에 송부되며, 각료회의는 판결의 이행을 감독함(협약 제46조 제2항)

8. 연락처

○ 주소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67075 Strasbourg Cedex
FRANCE

○ 전화번호 : +33 (0)3 88 41 20 18

○ 홈페이지 : https://echr.coe.int/

※ 출처 : 유럽인권재판소 홈페이지
유럽평의회 홈페이지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

(2022. 4. 작성)